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Korean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y
2026, Vol. 40, No. 3, 305-329
https://doi.org/10.21193/kjspp.2026.40.3.003

정규논문

양형 판단에서의 심각성-관용 효과: 국민참여재판 배심원과 판사의 판단 비교*

한 유 화[1)2)†] **이 진 리**[2)]

[1)]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2)]충북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는 심각성-관용 효과가 배심원과 판사의 양형 판단에서도 관찰되는지 파악하고, 배심원과 판사의 양형 판단 일치 양상을 비교함으로써 심각성-관용 효과의 기제를 탐색하고자 수행되었다. 분석한 자료는 2019년부터 2024년 사이에 선고된 국민참여재판 판결서 중 최종적으로 유예 없이 형이 선고된 사건 202건이었다. 분석 결과, 징역형과 벌금형 모두에서 가능한 처벌이 증가할수록 배심원과 판사의 양형 판단이 기준 범위의 하한으로 수렴하는 심각성-관용 효과가 관찰되었다. 또한, 가능한 처벌이 증가할수록 배심원 간 의견일치 가능성과 배심원과 판사의 의견일치 가능성은 모두 낮아졌으며, 심각성이 증가함에 따라 배심원 간의 의견일치 가능성이 배심원-판사 간 의견일치 가능성보다 더 크게 변화하였다. 본 연구에서 관찰된 심각성-관용 효과는 처벌 강화 여론과 상반된 결과이며 사건이 심각할수록 판단에 뒤따르는 책임감을 감소시키기 위해 동조할 것이라는 논리적 기대와도 배치된다. 논의에서는 국민참여재판의 법적 판단에 내재된 제도적 특성을 중심으로 기대와 상반된 본 연구결과의 가능한 이유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실제 재판 자료를 통해 심각성-관용 효과를 양형 판단의 영역으로 확장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주요어 : 양형 판단, 배심원, 판사, 국민참여재판, 심각성-관용 효과

* 이 논문은 2022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22S1A5B5A16052802).
†교신저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세로 50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yuhwahan82@gmail.com

ⓒ 2026, Korean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ical Association.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심각성-관용 효과(severity-leniency effect)는 가능한 처벌의 심각성이 증가할수록 피고인에 대한 평결(verdict)이 관대해지는 현상이다(Jones, Jones, & Penrod, 2015). 이 현상은 연구자들의 관심을 많이 받지 못하였지만 배심원의 유무죄 판단에 법 외적(extralegal) 요인의 영향과 체계적인 편향이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는 점에서 연구되어야 할 가치가 있다. 심각성-관용 효과는 결과적으로 불공정한 법적 판단을 증가시킴으로써 '사회 안전의 유지'라는 사법체계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악영향을 줄 수 있다.

심각성-관용 효과는 유무죄 판단(평결/판결)을 종속변인으로 연구된 효과이다(Davis, Kerr, Stasser, Meek, & Holt, 1977; Hester & Smith, 1973; Kerr, 1978; Vidmar, 1972). 그 이유는 아마도 배심원들에게 유무죄 판단의 의무만 주어지는 영미권 배심재판의 특성 때문일 수 있다. 그러나 가능한 처벌은 유무죄 판단뿐만 아니라 양형 판단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Kerr, 1978). 더욱이 유무죄 판단은 이분 범주 변인이고 양형 판단은 서열을 가지는 다수의 범주 또는 양적인 정보가 포함된 판단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양형 판단에서 법적 판단에 대한 심각성-관용 효과가 더 안정적으로 탐지될 가능성이 있다. 무엇보다 한국의 국민참여재판(이하 참여재판)에서는 배심원이 양형의견을 법원에 제시할 수 있다(국민의형사재판참여에관한법률-이하 참여재판법- 제46조 4항). 따라서 심각성-관용 효과가 양형 판단에서도 관찰되는지 확인하는 것은 특히 한국에서 그 실질적인 의미가 있을 수 있다. 참여재판에서 배심원의 평결과 양형의견은 법원의 판결과 양형에 대한 기속력이 없지만(참여재판법 제46조 5항), 참여재판의 판결서에는 피고인에 대한 법원과 배심원의 유무죄 판단과 양형에 대한 정보가 모두 기재된다. 본 연구는 참여재판 판결서에 기재된 정보를 활용하여 심각성-관용 효과가 배심원 및 판사(참여재판의 결과는 판사 3인의 결정으로, 재판부의 판단이지만 본 연구에서는 판단자를 나타내기 위해 판사로 지칭함)의 양형 판단에서 관찰되는지 확인하고 이 효과가 배심원과 판사에게 다르게 나타나는지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비교적 최근에 실제 재판 기록을 활용하여 심각성-관용 효과를 검증한 Bindler와 Hjalmarsson(2018)의 연구결과를 배심원과 판사의 양형 판단으로 확장할 뿐만 아니라 그 기제에 대한 단서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심각성-관용 효과

법심리학 영역에서 심각성-관용 효과가 관심받기 시작한 것은 Vidmar(1972)가 피고인에 대한 평결 범주의 수와 내용(심각성)을 조작하여 모의 배심원의 유무죄 판단을 관찰한 이후부터이다. Vidmar(1972)는 강도 미수 및 살인 사건의 시나리오를 읽은 모의 배심원들의 평결을 관찰하였다. 이 연구는 평결 범주 중 유죄(guilty)의 내용을 1급 살인, 2급 살인, 과실치사의 세 수준으로 구분하고 평결 범주의 수를 두 개에서 네 개까지 세 수준으로 구분한 후 평결 범주의 내용과 수를 조합하여 총 일곱 개의 실험조건[1]을 구성하고 평결을 하지 않는 통제 조건을 추가하여 총 여덟 개의 수준으로 조작하였고, 모의 배심원은 이 중 하나의 조건에 할당되었다. 실험조건에 따라 각 범주의 선택 비율(유무죄 판단 비율)을 관찰한 결과 평결 범주의 내용이 가장 심각하면서 평결 범주의 수가 두 개인 경우 즉, '무죄' 또는 '1급 살인' 중 하나로 판단해야 하는 경우 무죄판단(관용적 판단)의 비율이 가장 높았고(54.0%), 평결 범주가 네 개로 다양한 조건에서 무죄판단 비율이 가장 낮았다(6.0%). Kerr(1978)는 절도 사건 시나리오에서 피고인에게 제기된 혐의의 심각성을 세 수준(1급 살인, 2급 살인, 과실치사), 처벌의 심각성을 두 수준(징역 1-20년, 25년 이상)으로 조작[2]하여 무죄판단

1) 평결 범주 수(무죄 포함)가 두 개인 경우가 세 조건, 세 개인 경우가 세 조건, 네 개인 경우가 한 조건이었다(Vidmar, 1972, p. 215).

비율을 비교하였다. 그 결과 처벌 심각성이 낮은 조건보다 높은 조건에서 무죄판단 비율이 더 높았다. Kerr(1978)는 이 결과를 처벌 심각성에 따라 배심원들의 유죄판단 기준이 변화하기 때문이라고 추론하였다. 이후 Freedman(1990)은 실제 배심원을 대상으로 그들이 판단한 재판에서 더 심각한 처벌이 가능했다면 다른 판단을 했을지에 대한 가상적 질문을 하였고, 30%의 응답자는 더 심각한 처벌이 가능했다면 유죄에 투표할 가능성이 더 낮았을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이 결과는 실제 배심원들에게 심각성-관용 효과가 관찰될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반면에 McComas와 Noll(1974)의 연구에서는 혐의(charge)의 심각성 효과만 관찰되었고, 처벌(punishment) 심각성의 효과는 관찰되지 않았다. Hester와 Smith(1973)는 처벌 심각성의 효과를 관찰했지만 어떤 유형의 범죄인지에 따라 처벌 심각성의 효과는 달랐다. Davis 등(1977)의 연구에서는 피해(victimization)의 심각성과 처벌의 심각성을 각각 두 수준으로 조작하였는데 처벌 심각성이 증가하여도 무죄판단 비율은 증가하지 않았다. 또한, Freedman, Krismer, MacDonald와 Cunningham(1994)은 유무죄 판단에 대한 혐의와 처벌 심각성의 혼재된 결과가 혐의가 심각해질수록 더 강한 증명을 요구하는 법적 판단의 특성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들은 혐의와 처벌 심각성 외에 법적으로 요구되는 증거의 양을 통제한 실험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혐의나 처벌의 심각성이 증가하여도 무죄판단 비율은 높아지지 않았다. 이처럼 심각성-관용 효과에 관한 초기 연구들은 혼재된 결과를 보여준다.

초기 연구들이 발표된 이후 약 20년이 지난 최근에는 Jones 등(2015)이 처벌 심각성을 조작하여 유죄평결 비율을 확인하였으나 심각성-관용 효과를 관찰하지 못하였다. 이들의 연구에서는 처벌 심각성이 높아질수록 유죄평결 비율이 낮아지는 약한 경향성만을 확인하였는데 이 약한 효과는 법적 권위주의(legal authoritarianism) 수준에 따라 달라졌다. Bindler와 Hjalmarsson(2018)은 런던 올드 베일리 형사법원(London's Old Bailey Criminal Court)의 기록 자료(1772-1871년)를 활용하여 큰 역사적 변화(사형제도 폐지) 전후로 있었던 배심원의 판단을 비교하는 자연실험(natural experiment)을 수행하였다. 이 연구결과는 사형제도가 유지되는 동안에는 심각한 사건에서 무죄평결이 많았지만 사형제도가 폐지되면서 전체적으로 형벌의 강도가 감소된 것이 배심원들의 유죄평결 가능성을 높인다는 것을 보여주어 심각성-관용 효과가 실재함을 지지하였다. 비록 오래전 자료이기는 하지만 이들의 연구는 심각성-관용 효과를 방대한 실제 자료로부터 확인하였다는 의의를 갖는다.

심각성-관용 효과와 양형 판단

심각성-관용 효과는 유무죄 판단을 중심으로 연구되어 왔으며 양형 판단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거의 없다. Kerr(1978)는 탐색을 위해 유무죄 판단과 함께 양형 판단을 측정하였는데 처벌 심각성이 중간 정도인 조건들의 양형이 처벌 심각성이 높은 조건의 양형보다 낮았다. 그러나 처벌 심각성 자체가 곧 양형의 강도이므로 이 효과는 당연한 결과이다. 양형 판단에서 심각성-관용 효과는 유무죄 판단에서와 같은 방식 즉, 조건 간 양형을 직접 비교하는 방식을 통해서는 확인이 불가능하다. 혐의가 심각해질수록 처벌이 강해지고, 대부분의 경우 높아진 처벌의 범위 내에서 양형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양형 판단에서 심각성-관용 효과는 이 체계적인 변화의 정도가 심각성 수준에서 다를 때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Kerr(1978)가 처벌 심각성과 양형의 관계를 측정하였으나 그 결과는 심각성-관용 효과에 대해 알려주는 바는 없다.

위에서 간략히 언급한 것처럼, 선행연구에서 제한적인 종속변인이 사용된 것은 연구가 수행

2) 이 범주는 최종 분석에 사용된 범주이며 실제 실험에는 더 많은 수의 범주가 사용되었다.

된 국가의 사법체계 특성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 미국의 배심재판에서 배심원은 특별한 경우(사형이 가능한 재판)가 아니면 양형 판단을 하지 않기 때문에(Federal Rules of Criminal Procedure, Rule 32 - Sentencing and Judgment) 양형 판단에 대한 연구는 실제 재판에 대한 시사점을 갖기 어렵다. 그러나 한국의 참여재판 배심원은 양형에 대한 의견을 법원에 제시한다. 배심원의 양형의견은 법원에 제안될 뿐이지만 참여재판의 개선 방안에 관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한유화, 2023)는 점을 고려한다면, 심각성-관용 효과와 양형 판단에 관한 연구는 국내에서 그 중요성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심각성-관용 효과는 안정적으로 관찰되지 않았다. 유무죄 판단을 중심으로 심각성-관용 효과가 연구되어 온 것이 그 이유 중 하나일 수 있다. 종속변인의 측정 수준은 통계분석의 검증력(power)과 관련되어 있다(Cohen, 1988). 측정의 수준(Stevens, 1946)은 곧 측정치에 반영된 정보를 의미한다. 명목척도 수준으로 측정된 숫자에는 변인의 수준 간 서열이나 양에 대한 정보가 없고 이것은 검증력 차원에서 손해이다. 측정된 숫자에 정보가 많을수록(변량이 클수록) 실제로 존재하는 효과를 올바르게 탐지할 가능성(검증력)은 높아진다. 만약 심각성-관용 효과를 안정적으로 관찰할 수 없었던 것이 종속변인의 측정 수준 문제 때문이라면, 질적 차이에 따른 약간의 불명확성을 감수하더라도 양적 정보가 반영되는 양형 판단을 활용함으로써 이 문제를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심각성-관용 효과와 종속변인의 의미에 관해 Kerr(1978)가 논의한 바와 같이, 심각성-관용 효과는 본래 유무죄 판단에 관한 것이고 양형 판단에서 심각성-관용 효과가 관찰되더라도 유무죄 판단과 양형 판단은 질적으로 매우 다른 판단이라는 점에 유념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적 판단에는 유무죄 판단과 양형 판단이 모두 포함된다는 점에서 심각성-관용 효과의 심리적 기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유무죄 판단과 양형 판단 모두에 관한 지식이 요구된다.

배심원과 판사의 심각성-관용 효과

심각성-관용 효과는 해외에서도 충분히 연구되지 않았고 더욱이 국내에서는 관련 연구를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이러한 이유로 이 효과가 참여재판의 배심원들에게서도 관찰되는지, 배심원들에게서만 관찰되는 것인지 배심원과 판사 모두에게서 관찰되는 것인지에 관해서도 알려진 바가 없다. 심각성-관용 효과는 법 외적 요인의 효과이므로 배심원과 판사에게서 다르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배심원과 판사의 판단 차이는 주로 판사들이 받는 전문 교육과 직업적 훈련에 의한 것으로 추론된다. 예를 들면, 배심원과 판사는 모두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의 영향을 받지만, 자백 증거와 같은 특별한 증거에 대해서는 판사들이 배심원보다 그 부당한 영향에 덜 취약하다(Wistrich, Guthrie, & Rachlinski, 2004). '가능한 처벌(혐의에 따라 가능한 양형)'이라는 법 외적 요인은 필연적으로 배심원보다 판사에게 익숙한 개념이며, 법적 판단 과정에서 이 요인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판사들이 더 잘 인지하고 있을 것이다. 가능한 처벌이나 혐의 자체는 유무죄 판단과 무관해야 하며, 양형의 경우 이 개념들이 판단의 범위를 제한하기는 하지만 위에서 언급한 체계적 변화가 통제된다면, 양형 판단에 영향을 주어야 하는 합리적인 이유는 없다. 따라서 심각성-관용 효과는 판사보다 배심원에게 관찰될 가능성이 높다.

배심원과 판사의 차이를 추론하기 위해 심각성-관용 효과의 기제와 관련되었을 것으로 제안된 개념들을 검토해 볼 수 있다. Kalven, Zeisel, Callahan과 Ennis(1966)에 따르면 일부 판사들은 배심원들이 무죄 판단하는 이유를 피고인에게 내려질 처벌이 너무 가혹하다고 느끼기 때문이라고 추론한다. 심각성-관용 효과에 관한 초기 연구를 수행한 Vidmar(1972)는 피고인을 처벌하는 데 사용되는 판단자의 기준(유죄판단 기준)과

이 효과가 관련되어 있을 것으로 추측하였다. Kerr(1978)는 혐의와 처벌의 심각성을 독립적으로 조작하여 유죄판단 기준에 대한 효과를 직접 확인하였다. 그 결과 유죄판단 기준은 처벌 심각성이 중간 정도인 조건보다 심각한 조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더 높았다. 법적 판단에서는 무엇이 옳은 판단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Bornstein & Greene, 2011) 유죄판단 기준의 변화는 곧 잠재적인 오류 가능성의 변화를 의미한다. 유죄판단 기준이 높아지면 무죄판단이 증가하면서 실제 범인을 방면하는 제2종 오류 가능성이 증가하고, 낮아지면 유죄판단이 증가하면서 무고한 사람을 처벌하는 제1종 오류 가능성이 증가한다. 법적 판단은 사회적인 결정이기 때문에 법적 판단의 오류는 사회적 비용을 유발한다. Kerr(1978)는 혐의 또는 처벌의 심각성이 증가하면 배심원들은 자신들의 판단이 오류일 경우 사회적 비용이 높아지기 때문에 유죄판단 기준을 높이고, 그 결과로 무죄판단 비율이 증가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Freedman 등(1994)은 유죄판단 기준의 변화는 혐의가 달라지기 때문에 유죄판단에 요구되는 증명의 강도가 높아지면서 발생하는 현상이고, 유죄증명의 강도를 통제하면 유죄판단 기준의 변화도 심각성-관용 효과도 사라진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유죄증명의 강도를 통제하였을 때, 유죄판단 기준 변화와 심각성-관용 효과가 사라졌다는 것은 Freedman 등(1994)의 주장과 달리 유죄판단 기준의 변화가 심각성-관용 효과의 직접적인 원인일 가능성의 측면에서 해석될 수도 있다. 본 연구에서 목표한바, 양형 판단에 대한 심각성-관용 효과를 파악하는 것은 유죄판단 기준에 관한 어떤 지식도 제공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형 판단도 하나의 의사결정이므로 그 판단에는 어떤 기준이 사용된다. 심각한 사건일수록 가능한 양형의 강도가 높아지는 것은 유무죄 판단에서 유죄증명의 강도가 높아지는 것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심각성에 따라 달라지는 양형의 강도를 통제하고 심각성-관용 효과가 사라지는 지를 탐색한다면, 심각성-관용 효과의 원인을 추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또한, 양형 판단의 복잡성과 그 중요성 등을 고려한다면 배심원과 판사에게 심각성-관용 효과는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심각성에 따른 배심원/판사 판단의 예측

최근에 한 연구는 참여재판 배심원과 판사의 판단(평판결) 일치율이 범죄 심각성이 증가함에 따라 높아진다는 것을 발견하였고, 가능한 양형이 증가할수록 법원의 판단이 더 관대해질 수 있다(한유화, 2025)고 추론하였다. 참여재판 판결서를 분석한 보고서에 따르면, 참여재판이 시행된 이래 2022년까지 평균 무죄율은 가능한 처벌이 비교적 약한 '상해등'에서 약 0.76%, 그보다 처벌이 강한 '강도등', '성범죄등', '살인등'에 대해서는 각각 7.8%, 15%, 1.79%였다(법원행정처, 2023). 이것은 완벽하지는 않지만 강한 처벌이 가능한 사건에서의 무죄율이 더 높은 경향이 있음을 보여준다. 다만, 법원행정처 보고서의 무죄율은 법원의 최종 판단에서의 비율이고, 범죄분류는 세부적이지 않아 유사범죄와 미수 등의 범죄가 모두 포함되어 심각성-관용 효과가 관찰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보다 세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따라서 참여재판 판결서에 기재된 배심원과 판사의 평판결 불일치 양상, 배심원과 판사의 유무죄 판단과 양형 등의 정보를 활용하면 각 판단자(배심원과 판사)의 심각성-관용 효과의 기제를 간접적으로 탐색할 수 있을 것이다.

Vidmar(1972)와 Kerr(1978)가 제안한 바와 같이 혐의의 심각성이 증가하면 판단자는 법적 판단에 관한 오류에 더 민감해질 수 있다. 참여재판 판결서 분석 결과에 따르면 배심원의 무죄판단 비율은 판사보다 높다(법원행정처, 2023; 한유화, 2023, 2025). 이 결과는 유죄오판(제1종 오류)에 대한 판사들의 민감도가 배심원보다 낮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동시에 한유화(2025)의 연구에서 관찰된 더 심각한 사건에서의 높은 평판결 일치

율을 고려하면 혐의(범죄) 심각성에 따라 두 판단주체의 판단기준이 달라지는 정도가 다르며 판사의 판단기준 변화가 배심원보다 더 클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종합하면, 혐의 심각성이 증가할수록 판사의 제1종 오류에 대한 민감성이 증가하면서 유죄 판단기준이 증가(무죄판단 비율 높아짐)할 가능성이 있고, 판사의 유죄판단 기준이 높아지면서 평판결 일치율이 증가한 것일 수 있다. 이와 같은 추론이 타당하다면, 범죄의 심각성이 높을수록 배심원과 법원의 판단 차이는 감소하고 배심원들 사이의 판단 차이는 의미있는 수준으로 변화하지 않을 것이다. 다만, 참여재판의 평판결 불일치 비율은 매우 낮기 때문에 이 관계를 유무죄 판단 자료에 기초하여 통계적으로 확인하기는 어렵다. 양형 판단의 경우에도 오류에 대한 민감성이 증가하면 약한 양형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고, 양형 판단은 본질적으로 이분적 판단인 유무죄 판단보다 변량이 크다. 그러므로 유무죄 판단과 달리 양형 판단을 통해서는 이 관계를 통계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가능하다.

유사한 맥락에서 심각한 범죄일수록 판단자들은 판단 오류에 대한 책임감을 크게 느끼고 책임감을 줄이고자 타인과 유사한 판단을 하려는 경향(Darley & Latané, 1968) 즉, 다른 의견에 동조하려는 경향(Asch, 1956; Baron, Vandello, & Brunsman, 1996) 또는 판단을 미루려는 경향(Anderson, 2003)이 나타날 수 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참여재판에서 판사는 배심단의 의견을 듣고 존중하여 결정해야 한다. 만약 판사들도 심각한 사건에서 동조하려는 경향이 강해진다면, 더 심각한 사건에서 배심단의 의견을 존중하려는 경향이 더 강하게 나타나 배심단과 판사의 판단 차이는 작아질 수 있다. 심각성 수준에 따른 동조 현상이 두 판단 주체에게서 동일하게 나타난다면, 심각성 수준이 증가함에 따라 배심원과 판사뿐만 아니라 배심단 내 판단 차이도 감소할 것이다.

연구문제

본 연구는 오래전에 제안되었고 배심원과 판사의 의사결정 맥락에서 법심리학적으로 중요한 이슈이지만 연구자들의 관심을 충분히 받지 못한 심각성-관용 효과를 양형 판단 자료로부터 확인하고, 그 기제를 탐색하고자 하였다. 이 과정에서 배심원과 판사가 같은 형사사건에 대해 판단한 자료이면서 실제 재판 자료라는 점에서 분석적 가치가 높은 참여재판 판결서에 기재된 배심원과 판사의 법적 판단 정보를 활용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심각성-관용 효과는 양형 판단에서도 관찰되는가? 2) 법외적 요인의 효과인 심각성-관용 효과는 배심원과 판사에게 다르게 관찰되는가? 3) 심각성 증가에 따른 배심원 간 및 배심원과 판사의 양형 판단 일치율의 차이는 어떠한가(심각성-관용 효과의 기제에 관한 어떤 추론을 가능하게 하는가)? 본 연구를 통해 한국의 배심원과 판사에게 심각성-관용 효과가 관찰되는지 확인할 뿐만 아니라 배심원과 판사의 양형의견 일치 양상을 분석하여 심각성-관용 효과의 심리적 기제를 간접적으로 추론할 수 있을 것이다. 그 결과는 추후 배심원과 판사의 법적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법심리학적 지식을 확장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연구 방법

분석 대상

본 연구는 배심원과 판사에게 심각성-관용 효과가 관찰되는지를 양형 판단에 대해서 확인하고 판단의 주체에 따라 심각성-관용 효과가 다른지와 함께 형사사건의 가능한 형벌이 증가할수록 배심원 간 및 배심원과 판사의 양형 판단 일치율이 달라지는지 확인하기 위해 참여재판의 판결서를 분석하였다. 참여재

판의 판결서는 대법원의 판결서 열람시스템(https://www.scourt.go.kr/portal/information/finalruling/guide/guide_02.jsp)을 통하여 수집되었다. 분석에 사용된 판결서는 2019년에서 2024년 사이에 선고된 사건으로 '배심원'을 검색어로 사용하여 검색되는 판결서 중 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사건의 판결서였다. 검색된 판결서 중 참여재판으로 진행되었고 일반에 공개된 판결서는 총 566건이었고 피고인이 여러 명인 경우 독립적인 사건으로 자료화하여 20건을 추가하였다. 배심원과 판사의 양형 판단 비교를 위해 586건 중 일부 자료만 분석에 사용하였다. 분석에서 제외된 판결서는 1) 배심원 또는 판사가 무죄로 판단하였거나 판결서에 배심원의 양형의견이 기록되지 않은 판결서(157건), 2) 배심원과 판사가 내린 형의 유형(징역과 벌금)이 다른 판결서(26건), 3) 법률상 처단형 즉, 법률에 따라 판단된 양형의 기준(범위)이 제시되지 않은 판결서(10건), 4) 배심원들의 양형의견이 여러 개이면서 최빈값이 여러 개여서 배심단의 최종 양형을 결정할 수 없는 판결서(24건), 5) 배심원과 판사의 양형 판단이 전체 자료의 범위에서 크게 벗어나 이상값(outlier)으로 간주할 수 있는 판결서(47건)들이었다. 최종적으로 분석을 위해 선별된 판결서는 322건이었으나 집행유예와 선고유예가 선고된 사건은 유예 없이 형이 집행된 사건과 비교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심각성-관용 효과와 관련된 분석에는 유예 없이 형이 선고된 판결서 202건만을 사용하였다.

변인의 자료화

분석을 위해 수집된 판결서의 기본정보, 양형을 위한 기준 정보(법률상 처단형-이하 처단형-과 권고형) 및 배심원과 판사의 양형 판단(배심원의 경우 배심원들이 제시한 모든 양형에 대한 의견 및 다수결 규칙에 따른 최종 양형)이 자료화되었다. 판결서의 기본정보는 사건 특성에 관한 정보로 선고연도, 법원명, 사건번호, 기소된 죄명 및 인정된 죄명이 포함되었다. 양형을 위한 기준 정보는 인정된 죄명(여러 개인 경우 인정된 모든 죄명)에 대해 법률에 따라 제안되는 처단형과 양형기준이 적용된 권고형(양형기준이 마련된 죄명에만 해당함)이었다. 배심원과 판사의 양형 판단은 배심원이 제시한 다양한 양형의 견과 각 의견에 동의한 배심원의 수, 판사의 양형은 선고된 양형이었으며, 추가로 배심원과 판사가 판단한 형의 유형(징역 및 벌금), 유예 여부(유예 없음, 집행유예 및 선고유예)가 자료화되었다. 이 정보들은 판결서에 기재된 그대로 자료화되었고, 배심원 양형의 만장일치 여부와 배심원과 판사의 양형의견 일치 여부는 자료화된 정보에 기초하여 논리적으로 생성되었다. 특히 양형 판단은 인정된 죄명이 무엇인지와 그 개수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인정된 죄명에 따라 변화하는 양형 판단의 변화를 통제하기 위해 양형에 대한 기준 정보(처단형과 권고형)를 활용한 양형 변인을 새롭게 생성하였다. 이 변인들은 각각 징역형에 대해서는 '처단형 조정 양형', '권고형 조정 양형', 벌금형에 대해서는 '조정 벌금'으로 명명하였다. 이 변인들을 생성한 논리와 방법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하였고, 각 변인의 자료화 방법은 부록에 제시하였다.

분석 준비

심각성-관용 효과는 가능한 처벌이 증가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단이 관대해지는 현상이다. 그러나 유무죄 판단과 달리 가능한 처벌이 증가하는 경우 양형 판단은 함께 증가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양형 판단에서의 심각성-관용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죄가 무거워짐에 따라 증가하는 가능한 처벌의 강도를 고려해야 한다. 본 연구는 처단형과 권고형의 양형 기준 정보를 활용하여 배심원과 판사의 양형 판단을 조정하였다. 양형 판단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양형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가중/감경 요인을 고려한

처단형과 권고형을 기준으로 반영하기 때문에 사건에 따라 달라지는 가중/감경 요인들을 질적으로 통제하는 대신 양적으로 통제할 수 있게 된다. 단, 벌금형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처단형만을 기준정보로 활용하였다. 이 방법은 각 판결서에 기재된 처단형과 권고형의 하한과 상한 즉, 가능한 처벌의 전체 범위 내에서 배심원과 판사의 양형 판단 위치를 수량화하는 방법이다. 다시 말하면, 조정된 양형 판단들은 가능한 처벌의 범위 안에서 배심원과 판사 양형 판단의 상대적 위치를 나타낸다. 구체적으로, 처단형과 권고형, 벌금 기준의 상한에서 하한을 뺀 기간 또는 금액으로 배심원과 판사의 징역 기간 또는 벌금액에서 하한을 뺀 값을 나누어 계산하였다. 조정된 양형 판단의 가능한 값은 기준을 따르는 경우 0에서 1 사이의 값, 하한보다 낮으면 음수, 상한보다 높으면 1보다 큰 값으로 계산된다. 또한, 심각성-관용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처벌을 나타내는 단일한 지표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처단형과 권고형의 기준 범위 및 벌금 기준 범위의 중앙에 위치하는 값(평균)을 가능한 처벌의 대푯값으로 사용하였다.

분석

양형 판단의 심각성-관용 효과는 배심원과 판사의 양형 판단에 대해 가능한 처벌과 각 기준에서의 조정 양형 및 조정 벌금의 관련성을 보여주는 산포도를 그려 확인하였다. 더불어서 지수감쇠모형(exponential decay model)을 통해 산포도에서 관찰된 관계를 수량화하였다. 또한, 양형 판단의 심각성-관용 효과가 배심원과 판사에게 다르게 관찰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판단주체를 사건 내 변인(within variable), 가능한 처벌을 사건 간 변인(between variable)으로 하여 각 기준의 조정 양형과 조정 벌금을 예측하는 선형회귀모형을 검증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는 같은 사건에 대해 배심원과 판사가 모두 판단한 것이므로 위계적인 구조이다. 그러나 위계적 구조를 고려하여 혼합효과모형(mixed effect model)을 적용하고자 종속측정치에서의 상위 수준(사건) 변산성을 확인한 결과 그 변산성이 매우 낮아 혼합효과모형을 사용해야 할만한 충분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였고, 해석 용이성을 위해 일반선형모형을 적용하였다. 마지막으로 양형 판단의 심각성-관용 효과의 기제를 탐색하기 위해 가능한 처벌이 증가함에 따라 배심원 간 및 배심원과 판사의 양형의견 일치 여부가 달라지는지 파악하고자 의견일치 유형(배심원 간 의견 vs. 배심원-판사 의견)과 가능한 처벌을 각각 사건 내 및 사건 간 변인으로 하여 의견일치 여부를 예측하는 로지스틱 회귀모형을 검증하였다.

결 과

기술통계

분석 대상 판결서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 자료화한 변인들에 대한 기술통계 분석을 수행하여 표 1에 제시하였다.

표 1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전체 판결서 중 유예 없이 형이 선고된 사건은 202건(62.7%)이었으며, 집행유예 및 선고유예가 선고된 사건은 120건(37.3%)이었다. 집행유예와 선고유예가 선고된 사건을 포함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이 결정된 사건은 258건(80.1%), 벌금형이 결정된 사건은 64건(19.9%)이었으며, 전체 사건 중 양형기준이 적용된 사건은 229건(71.1%)이었다. 유예 없이 징역이 선고된 사건에서 배심원들이 만장일치로 양형을 결정한 사건은 26건(17.3%)이었고 유예 없이 벌금이 선고된 사건에서는 10건(19.2%)이었다.

유예 없이 형이 선고된 판결서에서 파악된 가능한 처벌은 처단형을 기준으로 하는 징역형의 경우 평균 139.2개월(SD = 90.6), 권고형을 기준으로 하는 징역형의 경우 평균 52개월(SD =

표 1. 주요 변인의 기술통계(N = 322)

변인		수준	N	%
유예 여부		유예 없음	202	62.7
		집행/선고유예	120	37.3
형의 유형		징역	258	80.1
		벌금	64	19.9
양형기준 적용 여부		미적용	93	28.9
		적용	229	71.1
배심원-판사 양형 판단 일치 여부		불일치	82	25.5
		일치	240	74.5
배심단 양형 만장일치 여부	징역 처단형	다수결	124	82.7
		만장일치	26	17.3
	징역 권고형	다수결	112	84.2
		만장일치	21	15.8
	벌금	다수결	42	80.8
		만장일치	10	19.2

변인		형의 유형	N	평균(표준편차)
가능한 처벌	처단형	징역	150	139.2(90.6)
		벌금	52	10,500(8,180)
	권고형	징역	133	52(62.8)
		벌금	9	5,060(2,130)
판사 양형		징역	150	29.7(20.3)
		벌금	52	3,280(2,130)
배심단 양형		징역	150	30.3(21.2)
		벌금	52	3,230(2,140)

주. 배심원과 판사의 양형 판단과 관련된 변인들은 유예 없이 형이 선고된 판결서(N = 202)만을 대상으로 하였음. 징역과 벌금의 처단형 및 권고형 기준의 가능한 형벌은 징역과 벌금 범위의 대푯값을 의미함. 징역이 선고된 모든 사건에는 처단형이 제시되는 반면 권고형은 양형기준이 마련된 사건에만 존재하고, 권고형의 범위는 언제나 처단형보다 좁으므로 처단형 분석에 사용된 자료와 권고형 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독립적이지 않고 포함관계임. 징역형의 단위는 개월, 벌금형의 단위는 천원임.

62.8)로 처단형이 권고형보다 더 높았다. 분석 대상 판결서의 배심원과 판사의 평균 양형은 각각 30.3개월(SD = 21.2)과 29.7개월(SD = 20.3)로 매우 유사하였다. 벌금형의 경우, 처단형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평균 10,500천 원(SD = 8,180), 권고형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평균 5,060천 원(SD = 2,130)으로 권고형의 평균이 더 낮았다. 벌금형이 선고된 사건들에서 판사의 평균 벌금액은 3,280천 원(SD = 2,130), 배심원의 평균 벌금액은 3,230천 원(SD = 2,140)이었다.

양형 판단의 심각성-관용 효과

양형 판단의 심각성-관용 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각 사건의 가능한 처벌과 배심원과 판사의 양형 간 관계를 시각화하였다. 양형 판단은 조정된 양형 판단 변인들을 이용하였다. 가능한 처벌이 증가함에 따라 배심원(좌)과 판사(우)의 조정된 양형 판단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보여주는 산포도를 그림 1에 제시하였다.

그림 1은 기준이 처단형과 권고형인 징역 판단, 벌금에 대한 판단 모두에서 가능한 처벌이 높아질수록 조정된 양형 판단의 변산성이 감소하며 기준 범위의 하한을 의미하는 0에 가까운 값으로 수렴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이 경향은 배심원과 판사 모두에게 관찰되었다. 다만, 벌금에 대한 판단은 하한보다 낮은 금액을 판단한 사례가 없었던 반면, 처단형과 권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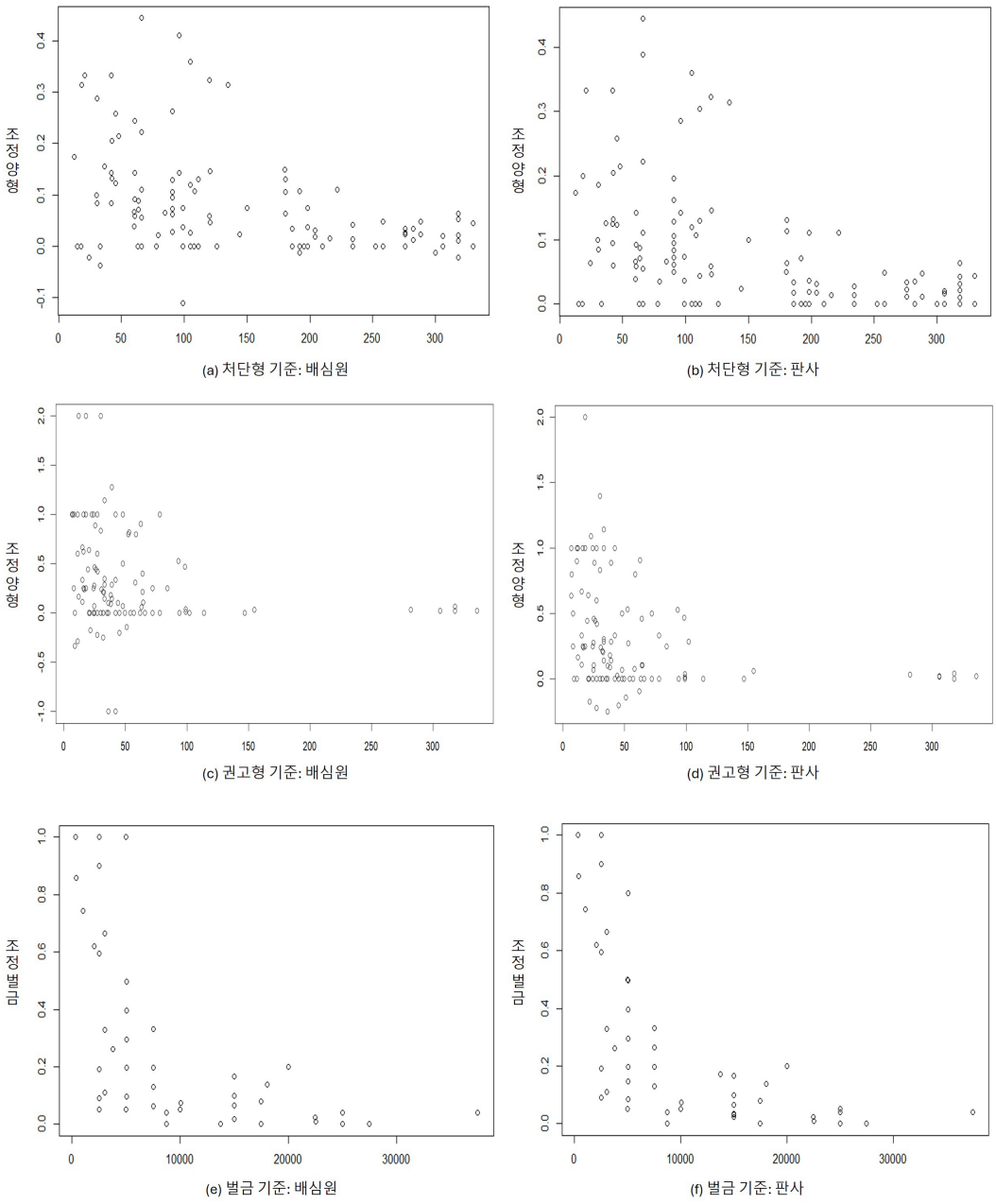


그림 1. 가능한 처벌에 따른 조정된 양형 판단. 징역형의 단위는 개월, 벌금형의 단위는 천원임.

형 기준의 징역에 대한 판단은 하한보다 낮은 양형을 판단하는 사례가 있었다. 그림 1에서 대략적으로 파악된 관련성을 수량화하고, 통계적 유의성을 확인하기 위해 탐색적인 목적으로 지수감쇠모형을 적합하였다. 지수감쇠모형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결과 변인이 지수적으로 감소하

는 현상을 설명하는 데 주로 활용되는 모형으로 결과 변인인 y(본 연구의 경우 조정된 양형 판단)의 초기값(a, 본 연구의 경우 가능한 처벌이 매우 낮은 사건에서의 조정된 양형 판단), 시간(x, 본 연구의 경우 가능한 처벌)에 따른 감쇠율(b), 수렴값(c)을 추정할 수 있다. 수식 1에 본 연구에서 사용한 지수감쇠모형을 제시하였다.

$$y = ae^{-bx} + c \qquad \text{수식 1}$$

본 연구는 가능한 처벌(x)이 증가함에 따라 판단자의 양형에 대한 판단이 감소하는 정도(b)를 수량화하고 초기값(a)과 수렴값(c)이 다른지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수감쇠모형을 활용하였고, 조정된 양형 판단에 대한 가능한 처벌의 효과를 파악하기 위한 지수감쇠모형을 검증한 결과는 표 2에 제시하였다.

표 2에 제시된 바와 같이, 배심원의 양형에서는 처단형($a=0.197, s.e=0.069, p<.01$)과 권고형 기준($a=0.714, s.e=0.255, p<.01$)의 조정 양형을 예측하는 두 모형 모두에서 초기값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이것은 가능한 처벌이 가장 낮은 수준일 때, 초기값이 가능한 처벌이 높아졌을 때 수렴하게 되는 값보다 큰 값임을 의미한다. 벌금형에 대해서는 감쇠율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b=2.220, s.e=0.543, p<.001$). 이것은 벌금에 대한 양형 판단에서는 가능한 처벌이 증가할수록 조정 벌금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하며, 가능한 처벌이 한 단위 증가할 때 조정된 벌금이 직전 조정 벌금의 약 10% ($e^{-2.220}=0.11$)만 남는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판사의 양형에서는 권고형 기준의 조정 양형과 조정 벌금에 대해서만 유의한 계수들이 관찰되었다. 권고형 조정 양형을 예측하는 모형에서는 초기값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a=0.595, s.e=0.155, p<.001$), 감쇠율은 유의수준 .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할 수 있었다($b=0.032, s.e=0.019, p=.095$). 조정 벌금을 예측하는 모형에서는 초기값($a=0.052, s.e=0.031, p=.092$)과 감쇠율($b=2.269, s.e=0.515, p<.001$)이 각각 유의수준 .1과 유의수준 .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벌금형에서 가능한 처벌이 한 단위 증가할 때 조정 벌금이 직전 조정 벌금의 약 10% ($e^{-2.269}=0.10$)만 남는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지수감쇠모형의 적합도(R^2)는 벌금형에 대해서만 59.5% 이상으로 나타나 벌금형에 대한 모형만이 자료의 변산성을 수용가능한 수준으로 설명한다고 할 수 있었다.

표 2. 가능한 처벌과 조정된 양형 판단에 대한 지수감쇠모형

결과 변인	배심원				판사			
	a(s.e)	*b(s.e)*	*c(s.e)*	R^2	*a(s.e)*	*b(s.e)*	*c(s.e)*	R^2
처단형 조정 양형 (N = 148)	0.197 (0.069)**	0.005 (0.005)	-0.028 (0.089)	.176	0.211 (0.129)	0.004 (0.004)	-0.058 (0.149)	.188
권고형 조정 양형 (N = 130)	0.714 (0.255)**	0.046 (0.030)	0.131 (0.101)	.089	0.595 (0.155)***	0.032 (0.019)†	0.079 (0.101)	.114
조정 벌금 (N = 53)	0.056 (0.034)	2.220 (0.543)***	0.044 (0.046)	.563	0.052 (0.031)†	2.269 (0.515)***	0.051 (0.042)	.595

주. 처단형 조정 양형에 대한 모형과 권고형 조정 양형에 대한 모형 검증에 사용된 자료는 포함관계임.
†p < .1, **p < .01, ***p < .001

심각성-관용 효과와 판단주체의 상호작용 효과

판단주체에 따라 심각성-관용 효과가 다르게 나타나는지 확인하기 위해 판단주체를 사건 내 변인으로 하고, 가능한 처벌을 사건 간 변인으로 하는 선형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가능한 처벌은 처단형과 권고형을 기준으로 하는 징역형 및 벌금형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들 자료는 분리하여 분석하였다. 단, 그림 1에 제시된바, 가능한 처벌과 조정된 양형 판단 간 관계는 선형적인 관계가 아니므로 조정된 양형 판단 값을 로그변환하여 분석하여 보고하는 것이 적절하지만 변환 전 값을 이용한 선형회귀분석의 결과와 그 결과가 다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 회귀계수의 의미를 그대로 이해할 수 있다는 해석상의 이점을 고려하여 로그변환하지 않은 조정된 양형 판단을 사용하여 선형회귀분석을 수행한 결과를 보고하였다.

표 3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조정된 양형 판단 모두에서 가능한 처벌의 효과만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세 모형 모두에서 가능한 처벌이 증가할수록 조정된 양형 판단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처단형 조정 양형은 가능한 처벌이 증가할수록 보통 정도의 강도로 감소하였고 ($B=-0.039, \beta=-.401, t=-4.993, p<.001$), 권고형 조정 양형의 경우 처단형 조정 양형보다 그 강도가 다소 작았다($B=-0.102, \beta=-.233, t=-2.737, p<.01$), 조정 벌금은 가능한 처벌이 증가할수록 크게 감소하였다 ($B=-0.148, \beta=-.568, t=-4.863, p<.001$). 다만, 이 강도는 가능한 처벌과 조정된 양형 판단의 비선형적 관계를 고려한다면 과소추정되었을 가능성이 있음에 유념해야 한다(조정된 양형 판단을 로그변환한 값을 활용하는 경우, 처단형과 권고형 조정 양형과 조정 벌금에 대한 가능한 처벌의 표준화된 회귀계수는 각각 -.416, -.204, -.596으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함). 또한, 세 모형 모두에서 가능한 처벌과 판단주체의 상호작용 효과는 관찰되지 않아서 심각성-관용 효과는 배심원과 판사에게서 다르지 않을 것으로 기대

표 3. 판단주체 및 가능한 처벌에 따른 조정된 양형 판단 예측을 위한 회귀분석

결과 변인	예측 변인	*B(s.e)*	β	*t*	*p*	R^2
처단형 조정 양형 (N = 131)	절편	0.085(0.007)		11.371	.000	.155
	판단 주체	-0.004(0.011)		-0.402	.688	
	가능한 처벌	-0.039(0.008)	-.401	-4.993	.000	
	판단 주체×가능한 처벌	0.002(0.011)		0.147	.883	
권고형 조정 양형 (N = 131)	절편	0.315(0.038)		8.376	.000	.052
	판단 주체	-0.023(0.053)		-0.430	.667	
	가능한 처벌	-0.102(0.037)	-.233	-2.737	.007	
	판단 주체×가능한 처벌	0.006(0.053)		0.118	.906	
조정 벌금 (N = 50)	절편	0.225(0.030)		7.457	.000	.318
	판단 주체	0.003(0.043)		0.065	.949	
	가능한 처벌	-0.148(0.030)	-.568	-4.863	.000	
	판단 주체×가능한 처벌	0.002(0.043)		0.056	.955	

주. 판단주체의 참조 범주는 배심원임. 처단형 조정 양형에 대한 모형과 권고형 조정 양형에 대한 모형 검증에 사용된 자료는 같은 자료임.

표 4. 의견일치 유형과 가능한 처벌에 따른 양형 판단 일치 여부 예측을 위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변인	예측 변인	*B*	*s.e*	*Z*	*OR*	*CI*	
						LL	*UL*
처단형 조정 양형 (*N* = 142)	절편	-1.668	0.283	-5.897***	0.189	0.108	0.328
	의견일치 유형	2.571	0.338	7.602***	13.074	6.739	25.367
	가능한 처벌	-1.187	0.346	-3.429***	0.305	0.155	0.601
	의견일치 유형×가능한 처벌	1.114	0.392	2.843**	3.045	1.413	6.563
권고형 조정 양형 (*N* = 142)	절편	-1.473	0.251	-5.876***	0.229	0.14	0.375
	의견일치 유형	2.383	0.313	7.624***	10.838	5.874	19.999
	가능한 처벌	-0.881	0.500	-1.761	0.414	0.155	1.104
	의견일치 유형×가능한 처벌	0.648	0.529	1.224	1.911	0.677	5.39
조정 벌금 (*N* = 52)	절편	-1.436	0.352	-4.078***	0.238	0.119	0.474
	의견일치 유형	2.546	0.478	5.324***	12.760	4.997	32.58
	가능한 처벌	-0.045	0.359	-0.124	0.956	0.473	1.933
	의견일치 유형×가능한 처벌	0.264	0.499	0.529	1.302	0.49	3.46

주. 의견일치 유형의 참조 범주는 '배심원 간' 수준임. 처단형 조정 양형에 대한 모형과 권고형 조정 양형에 대한 모형 검증에 사용된 자료는 같은 자료임.

p < .01, *p < .001

할 수 있었다.

가능한 처벌에 따른 배심원 간/배심원-판사의 양형 판단 일치 여부

가능한 처벌이 증가함에 따라 양형 판단 일치 여부에 대한 의견일치 유형의 효과가 달라지는지 확인하기 위해 의견일치 유형을 사건 내 변인, 가능한 처벌을 사건 간 변인으로 하는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표 4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의견일치 유형의 효과는 처단형(B=2.571, Z=7.602, p<.001, OR=13.074, 95% CI[6.739, 25.367])과 권고형(B=2.383, Z=7.624, p<.001, OR=10.838, 95% CI[5.875, 19.999])을 기준으로 한 가능한 처벌과 벌금(B=2.546, Z=5.324, p<.001, OR=12.760, 95% CI[4.997, 32.58]) 모두에서 관찰되었다. 즉, 배심원과 판사의 양형 일치 가능성은 배심원들 사이의 양형 일치 가능성보다 징역형과 벌금형 모두에서 약 10배가량 높았다. 또한, 가능한 처벌의 기준을 처단형으로 했을 때는 가능한 처벌(B=1.187, Z=3.429, p<.001, OR=0.305, 95% CI[0.155, 0.601])의 주효과와 의견일치 유형과 가능한 처벌의 상호작용 효과(B=1.114, Z=2.843, p<.01, OR=3.045, 95% CI[1.413, 6.563])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이것은 처단형을 기준으로 한다면, 징역에 대한 양형 판단은 가능한 처벌이 증가함에 따라 판단자들 사이에 의견이 불일치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 효과는 의견일치의 대상이 배심원들인지, 배심원과 판사인지에 따라 다르다는 것을 의미한다. 의견일치 유형과 가능한 처벌의 상호작용 효과 양상을 확인하기 위한 그래프를 그림 2에 제시하였다.

그림 2는 처단형 기준의 가능한 처벌이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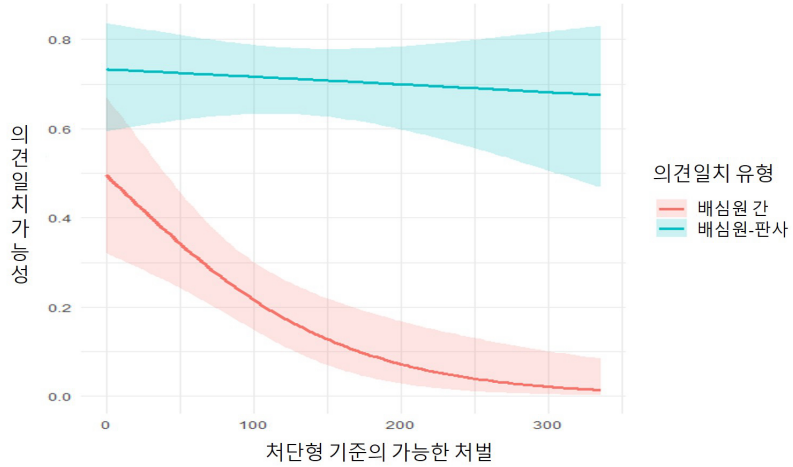


그림 2. 가능한 처벌(개월)과 의견일치 유형에 따른 의견일치 가능성

할수록 배심원 간의 의견일치 가능성은 급격하게 낮아지지만 배심원과 판사의 의견일치 가능성은 완만하게 낮아진다는 것을 보여준다. 즉, 가능한 처벌이 증가할수록 배심원들 사이의 의견일치가 배심원과 판사의 의견일치보다 더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논 의

심각성-관용 효과에 관한 법심리학 연구는 소수에 불과하고 연구결과는 혼재되어 있다. 더욱이 국내에서는 심각성-관용 효과에 관한 연구를 전혀 찾아볼 수 없다. 본 연구는 2019년에서 2024년 사이에 선고된 참여재판의 판결서 중 유예 없이 형이 선고된 사건의 판결서 202건을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심각성-관용 효과가 배심원과 판사의 양형 판단에서도 관찰되는지 여부와 그 양상을 확인하고, 가능한 처벌이 증가함에 따라 관찰되는 일치유형(배심원 간 vs. 배심원-판사)의 효과를 바탕으로 심각성-관용 효과의 심리적 기제를 추론하고자 시도하였다.

양형에서의 심각성-관용 효과

가능한 처벌과 배심원과 판사의 조정된 양형 판단의 산포도를 확인한 결과(그림 1), 배심원과 판사 모두에서 가능한 처벌이 증가함에 따라 조정된 양형 판단이 감소하는 경향이 관찰되었다. 특히, 조정된 양형 판단의 강도와 함께 변산성도 감소하였다. 가능한 처벌과 양형 판단의 관계를 수량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지수감쇠모형을 적합한 결과, 조정 벌금에 대한 분석에서만 감쇠율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는데, 이것은 가능한 처벌이 증가할 때, 조정 벌금이 지수적으로 감소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가능한 처벌이 약한 구간에서는 조정 벌금이 급격하게 감소하지만, 어느 강도 이상에서는 조정 벌금이 서서히 감소할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징역형에 대한 판단에서 감쇠율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그림 1을 보면, 징역형은 가능한 처벌이 증가함에 따라 조정 양형이 감소하지 않는 사례의 빈도가 벌금형보다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사례들은 지수감쇠모형에서 잡음(noise, 오차)으로 간주되므로, 회귀계수에 대한 표준오차를 증가시킴으로써 감쇠율 계수의 통계적 유의성에 영향을 주었을 수 있다(Hamilton,

2020; Smith, 1982). 징역형과 벌금형에서 잡음에 해당하는 사례의 빈도가 다르다는 것은 배심원과 판사의 양형 판단이 징역형과 벌금형에서 다른 심리적 기제로 이루어질 가능성을 보여준다. 예를 들면, 가능한 처벌 외의 개인차와 관련된 다른 요인이 벌금형보다 징역형에서 더 큰 영향을 가질 수 있다. 다만, 이 요인이 법적 요인일지 법 외적 요인일지, 특정 요인의 효과라기보다 판단과정에 의한 차이일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법적 판단은 증거에 의해서만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판결서에는 법 외적 요인에 대한 정보가 불충분하다. 따라서 추후에는 관련하여 체계적으로 설계된 조사 또는 실험을 통해 징역형과 벌금형 판단의 차이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징역형과 벌금형 판단의 차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가능한 요인 중 하나로 각 형벌에 대한 판단자의 지각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벌금형은 피고인의 죄가 모든 판단자에게 익숙하며 실체가 있는 금전(Grimalda, Ottoboni, Cappellini, Bonato, & Ranzini, 2025)으로 환산되지만, 징역형에서 피고인의 죄는 박탈되는 피고인의 '자유' 또는 '시간'의 양으로 환산된다고 볼 수 있다. 금전적인 추론과 추상적인 개념에 대한 추론은 다른 인지적 처리 과정을 거칠 수 있다(Messimeris, Levy, & Le Bouc, 2023; Nitsch, Garvert, Bellmund, Schuck, & Doeller, 2024). 징역형은 추상성이 높고 그 중요성에 대한 지각에서 개인차가 큰(Diveica, Muraki, Binney, & Pexman, 2025) 개념이 양형 판단에 개입하는 것이다. 이 추론이 타당한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판단자들이 벌금형과 징역형이 '어떻게' 피고인에게 처벌이 된다고 생각하는지 질문하고 그 답에서 징역형을 더 추상적으로 이해하고 있는지 파악한 후, 징역형 판단에서의 개인차가 벌금형에서보다 더 큰지 등을 체계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지수감쇠모형을 적합한 결과, 수렴값이 0인지를 검증하는 계수 c는 모든 양형 판단에 대해서 유의하지 않았다. 이것은 배심원과 판사의 조정된 양형 판단이 기준으로 제시되는 처단형과 권고형의 하한(0)에 수렴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배심원과 판사의 양형 판단에서 가능한 처벌이 증가할수록 판단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상대적으로 더 약해진다(즉, 가능한 처벌의 강도에 따라 양형 판단의 변량이 감소하며 하한으로 수렴한다)는 것은 배심원과 판사의 양형 판단 경향성은 최근 언론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처벌 강화 여론(이재상, 2025)이 실제 자료와 불일치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심각성-관용 효과 자체뿐만 아니라, 가능한 처벌이 높아질수록 양형 판단은 점점 더 약한 처벌로 수렴하기 때문이다. 참여재판은 일반 시민의 의견을 법적 판단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참여재판법 제1조). 본 연구의 결과는 언론을 통해 보도되는 여론이 판사의 판단과 다른 것은 물론이고 참여재판 배심원의 판단과도 다르다는 것을 보여준다. 참여재판 판결서를 분석한 한 선행연구는 배심원들이 오히려 피고인에게 더 온정적이라는 것을 보여주기도 하였다(한유화, 2022). 배심원과 판사의 실제 법적 판단과 여론에 드러난 법감정의 차이에는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다. 법적 판단은 증거와 법적 규칙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지만 여론은 일반인의 순수한 도덕적 판단이 드러난 것이다. 또한, 법적 판단이 이루어지는 재판에서 판단자들이 얻는 정보와 여론이 형성되는 과정에서의 일반인들에게 제공되는 정보의 질과 양에는 차이가 있고 경우에 따라 편향이 있을 수 있다. 법적 판단은 사회적인 판단이지만 도덕적 판단은 사적인(private) 판단이기 때문에 판단자가 지각하는 판단의 영향력과 판단에 대한 책임에도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요인들이 심각성-관용 효과에서 가지는 영향력을 파악하는 것은 여론과 법적 판단의 차이를 이해함과 동시에 심각성-관용 효과가 법적 판단에서의 편향인지, 일반적인 도덕 판단의 편향인지에 대한 지식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가능한 처벌이 증가할 때 양형이 하한에 수렴하는 현상이 배심원과 판사 모두에게서 관찰되었다는 점은 양형에 대한 법적 판단 과정에서 배심원과 판사가 공유하는 상황이나 인간적인 속성이 심각성-관용 효과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상황적 요인으로는 재판에 제시되는 양 당사자 측의 주장 및 정보가, 인간적 속성으로는 법적 판단에 뒤따르는 심리적 부담과 인지적 편향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재판에서 양형에 영향을 주는 정보는 다수의 사건을 종합한다면 피고인에게 유리할 수도, 불리할 수도 있으므로 가능한 처벌에 따른 체계적 양형 판단 변화(감소)를 설명하기 어렵다. 따라서 배심원과 판사가 공유하는 인간으로서의 속성이 심각성-관용 효과에 대한 더 좋은 설명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서론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사건의 심각성이 증가하면 판단 오류에 관한 책임감과 심리적 부담이 커질 수 있다(Kerr, 1978; Vidmar, 1972). 본 연구에서 관찰된 심각성-관용 효과도 심각성에 따른 심리적 부담의 증가가 배심원과 판사 모두에게 일어났기 때문일 수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법적 의사결정에서 배심원과 판사가 경험하는 심리적 부담에 관한 경험적 증거를 보여주는 자료는 국내에서도, 해외에서도 찾아보기 어렵다. 아마도 국내에서는 참여재판에 대한 연구자들의 관심이 적고, 해외의 경우 배심원이 양형을 판단하지 않기 때문일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사건의 심각성(가능한 처벌)과 양형 판단, 판단에 대한 책임감 또는 심리적 부담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 양형 판단의 책임감에 대한 측정치를 포함하지는 않지만, 사건의 심각성에 따라 판단자(배심원과 판사)의 양형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결과를 보여주는 연구는 소수 있다. Pearson 등(2018)은 변호사나 로스쿨 학생들과 달리 일반인들의 양형 판단은 사건의 심각성이 증가할수록 증가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이들의 연구가 일반인과 법률 지식이 있는 판단자에게서 양형 판단에 대한 사건 심각성의 효과가 다르다는 것을 보여준 것과 달리 본 연구는 일반인과 법률 전문가(판사) 모두에게서 심각성-관용 효과가 관찰되며, 가능한 처벌이 증가할수록 양형이 하한에 수렴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연구의 부족 및 혼재된 결과는 심각성-관용 효과의 기제에 관한 연구 이전에 사건 심각성과 법적 판단의 관계에 더 많은 연구자들의 관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심각성-관용 효과가 단순한 인지적 편향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편향은 판단과 무관한 정보의 영향(Tversky & Kahneman, 1974)이다. 양형 판단에서의 편향은 판단에 사용되는 척도(징역 개월 수, 벌금액)가 가지는 의미 때문일 수 있다. 척도의 내용에 기인한 편향 가능성을 확인하는 한 가지 방법은 양형 판단의 척도에서 의미를 제거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양형을 측정하기 위해 1에서 100까지의 양형 강도만 제시하고, 어느 정도의 형량이 적절한지를 1부터 100 사이의 값으로 측정한 후 징역의 경우 처단형과 권고형 처벌 범위 내에서의 개월 수로, 벌금의 경우 금액으로 환산하는 것이다. 의미를 제거하여 측정한 양형에서 심각성-관용 효과를 관찰할 수 없다면, 심각성 관용 효과의 가능한 편향 요인 중 하나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배심원과 판사 모두 가능한 처벌이 증가할수록 관대한 양형을 판단하였지만 판사들은 대부분 기준 내에서 양형 판단을 했던 반면, 배심원은 판사보다 자주 기준을 벗어나는 판단을 하였다(그림 1). 이것은 판사가 전문 법관이기 때문에 관찰되는 현상일 수 있다. 일회성으로 법적 판단을 하면서 자신들의 양형의견이 피고인에게 직접적인 영향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는 참여재판의 배심원들에게 법률로 정해지거나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는 무시되기 쉬울 것이다. 반면에 판사들에게는 처단형이나 권고형이 직업적으로 따라야 하는 규칙이고 이 규칙을 벗어나는 경우

에는 설명의 의무가 있으므로 이 규칙을 준수하려는 의지가 배심원들보다 강할 수 있다.

법률 준수 의지 외에 다른 가능성이 있는지 탐색하기 위해 배심원, 판사 또는 둘 모두가 기준을 벗어나 판단한 판결서의 내용을 확인하였다. 배심원과 판사가 모두 처단형의 상한을 벗어나 판단한 경우는 없었으며, 권고형의 상한보다 높은 양형을 판단한 사건은 대부분 강력범죄(특수상해, 준유사강간 등) 사건이었다. 배심원과 판사가 모두 하한보다 낮은 양형을 판단한 경우는 세 건은 강력범죄(폭행, 유사강간, 준강간 등), 나머지 두 건은 업무방해와 사기 사건이었다. 판결서에 제시된 정보가 제한적이므로 배심원과 판사가 모두 기준을 벗어난 사례들은 두 판단주체가 양형인자들에 동의하였다고 가정하고, 배심원과 판사 중 한 판단주체만 기준을 벗어난 사례는 양형인자들에 동의하지 않았을 것으로 가정하고 내용을 분석하였다. 이 가정을 따른다면, 배심원과 판사가 기준을 벗어나면서 그 의견이 불일치한 경우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과 불리한 사정을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달랐을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그 내용을 예로 들면, 판사만 상한을 벗어난 양형을 판단한 경우 판사는 권고형의 상한을 3개월 초과하는 징역을 선고하면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피고인이 공권력을 신뢰할 수 없다는 말을 하고 배심원들이 평의를 하는 동안 피고인이 구금되어 있으면서 난동을 부린 점을 제시하였다(청주지방법원 2021고합227). 또한, 배심원들만 상한을 벗어난 양형을 제시한 사건의 판결서를 검토한 결과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이 우발적이었고, 부양가족이 있다는 점(수원지방법원 2021고합814),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고 동시에 진행되는 재판과의 형평을 고려한 양형이 필요하다는 점(울산지방법원 2019고합52)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상한을 유지하였다. 배심원과 판사가 모두 하한보다 낮은 양형을 판단한 경우 피고인의 반성과 피해자의 처벌불원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반영되었으며, 세 건의 성범죄 사건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있었거나 노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이 고려되었다. 또 다른 사례에서 배심원들은 법원과 다른 방식으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적용하기도 하였다(서울북부지법 2019고합396, 배심원은 제1범죄의 상한에 제1범죄 상한의 1/2을 합산하고 법원은 제2범죄 상한의 1/2을 합산함). 결론적으로 양형 인자에 대한 판단에서의 비교적 작은 차이(약 2개월~6개월) 외에 기준을 벗어난 사례가 가지는 중요한 내용적 특성은 발견하지 못하였다. 다만, 위에서 언급한바, 기준을 벗어난 판단이 있었던 사건의 대부분이 강력범죄였다는 점은 법적 판단에 있어서 강력범죄 사건이 다른 형사사건에 비해 특별할 가능성은 있다고 사료된다.

판결서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는 오히려 판사들의 법률 준수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었다. 배심원이 하한보다 낮은 양형의견을 제시한 사건 다섯 건 중 네 건(광주지방법원 2024고합42; 대전지법 2018고합428; 창원지법 2018고합241; 춘천지방법원 2023고합37)은 권고형의 하한이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여 처단형의 하한을 따라야 하는 사건이었다. 이 중 세 건에서 판사들은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하였지만, 배심원은 처단형 보다 낮은 권고형의 하한에 해당하는 의견을 주로 제시하였고, 한 건에서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되기 전의 권고형 범위의 중간 정도 양형을 제시하였다. 처단형에 따른 수정이 없었던 한 건(서울동부지법 2020고합356)에서 배심원은 권고형의 하한인 2년 6월을 따르지 않고 2년을 제시하였다. 한 사건(광주지방법원 2024고합42)을 제외하고는 배심원 의견 중 일부가 권고형의 하한을 따라 제시되었는데, 이것은 배심원들의 의견에 다수결을 적용하여 판단한 배심단의 의견이 하한을 벗어나는 경우에도 일부 배심원들은 하한을 따른 의견을 제시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결과로부터 법률 준수 의지에서 배심원 간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

의견일치 유형 간 비교를 통한 심각성-관용 효과의 기제 추론

가능한 처벌에 따라 배심원 간 의견일치 여부와 배심원-판사의 의견일치 여부가 달라지는지 확인하기 위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조정된 양형 판단 모두에서 배심원 간 양형의견 불일치가 배심원-판사의 양형의견 불일치보다 높았다. 참여재판에서 유무죄 판단과 양형이 이루어지는 과정과 관련 법률에 비추어 보면 이 결과는 합리적이다. 참여재판의 판사는 배심원의 유무죄 판단과 양형의견을 고려하여 선고해야 하므로 판사의 양형의견은 배심원 양형의견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유무죄 판단과 달리 양형에 대해서 배심원들에게는 만장일치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고, 양형에 대한 의견을 결정할 때에는 재판부와 함께 하도록 되어 있다(참여재판법 제46조 제4항). 따라서 배심원들 사이의 양형 합의 가능성은 배심원 의견을 참고하여 결정해야 하는 판사와 배심원 의견의 합의 가능성보다 낮을 수 있다. 본 연구의 중요한 발견은 양형일치 유형의 효과가 가능한 처벌이 증가함에 따라 더 커진다는 점이다(그림 2). 이것은 본 연구의 서론에서 제시한 가능성과 상반된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이 결과는 참여재판의 배심원과 판사의 유무죄 판단을 비교한 연구(한유화, 2025)에서 관찰된 더 심각한 사건일수록 배심원-판사의 판단 일치율이 높다는 결과와도 배치된다. 서론에서 본 연구는 심각성-관용 효과의 혼재된 결과의 가능한 원인으로 측정의 수준을 제시하였다. 측정의 수준만이 원인이라면 명목척도 수준의 측정인 유무죄 판단에서 관찰되지 않은 현상이 최소한 서열척도 수준으로 간주될 수 있는 양형 판단에서 관찰될 가능성이 더 높다. 그러나 본 연구는 그 반대의 결과 즉, 유무죄 판단에서는 관찰되었던 경향성이 양형 판단에서는 관찰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것은 두 법적 판단(또는 판단 측정치) 사이의 질적인 차이가 반영된 것일 수 있다. 동시에 선행연구와 배치되는 본 연구의 결과는 배심원의 유무죄 판단과 양형 판단이 참여재판의 최종 결과에 대해 가지는 중요성의 차이 때문에 관찰된 것일 수 있다. 추후 연구에서 이 혼재된 결과가 제도의 특성에 기초한 것인지, 유무죄 판단과 양형 판단의 의사결정 특성에 의한 것인지 확인할 수 있다면, 그 결과는 배심원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새로운 지식으로서 참여재판의 제도 개선에 유용한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에 기초하여 사건의 심각성이 증가할수록 배심원들 및 배심원과 판사 사이의 의견일치 가능성이 모두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였다. 다만, 연구자들은 그 높아지는 비율이 두 의견일치 유형에서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확인함으로써 심각성-관용 효과의 기제를 추론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결과, 가능한 처벌이 증가함에 따라 배심원들 사이의 일치 가능성은 오히려 낮아졌으며, 이것은 심각성이 증가함에 따라 배심원들의 동조는 낮아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배심원 간 동조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한 이유는 심각성이 높아질수록 판단자의 책임감과 판단오류에 대한 회피 경향이 증가할 것(Deutsch & Gerard, 1955)이라는 고전적인 선행연구의 주장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또한, 다수의 사회심리학 연구가 보여준 바와 같이 높아진 책임감을 분산하기 위해 동조가 일어날 것(Darley & Latané, 1968)이라고 기대하였기 때문이다. 본 연구가 당연한 것으로 가정했던 동조와 책임감의 관계 또는 논리적으로 타당해 보이는 사건의 심각성과 판단자가 지각하는 책임감의 관계 중 최소한 어느 하나는 참여재판 배심원들에게서 다른 방식으로 작용했을 수 있다. 즉, 사건의 심각성이 높아져도 책임감이 증가하지 않거나, 책임감이 증가해도 동조가 일어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위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배심원의 양형의견은 합의될

필요가 없고, 판사에게 하나의 의견으로 제시될 뿐이다. 따라서 배심원 개인 수준에서 책임감이 증가하더라도 그 책임감은 효용이 없다. 또는, 높아진 책임감 때문에 역설적으로 비전문가인 자신들보다 전문가인 판사의 의견에 대한 의존성이 높아질 수도 있다. 이 경우 배심원들은 각자가 생각하는 양형의견을 제시하지만, 그 의견에 가치를 두고 토의에 임하기보다는 이미 사회적으로 밝혀진 자신의 입장(양형의견)을 유지하며 일관적인 사람으로 보이길 원하고, 따라서 동조는 낮아질 수 있다(Deutsch & Gerard, 1955). 본 연구의 결과가 참여재판의 양형 판단 과정의 특성에 의한 것인지, 사건 심각성이 증가해도 배심원들의 책임감이 증가하지 않기 때문인지에 대해서는 위에서 언급했던 것과 같이 사건의 심각성에 따른 양형 판단 및 그 판단에 대한 책임감을 확인하는 실험에 양형 판단의 중요성(배심원의 양형 판단이 선고형량이 되는 조건과 판사에게 의견으로 제시만 되는 조건으로 조작)을 독립변인으로 추가한 실험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이 실험은 배심원 수준보다는 배심단 수준의 실험으로 계획되어 개인과 집단의 양형 판단을 모두 측정하고 그 일치율(또는 동조율)과의 관계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의의 및 제언

본 연구는 심각성-관용 효과에 관한 지식을 양형 판단에까지 확장했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 심각성-관용 효과는 유무죄 판단으로부터 제안된 효과이기 때문에 그동안 수행된 연구들은 유무죄 판단에 초점을 맞추어왔다. 본 연구는 그 효과가 일관적으로 관찰되지 않은 이유 중 하나로 측정되는 변인의 정보가 제한적이기 때문일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양적 정보인 양형 판단을 대상으로 심각성-관용 효과를 관찰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효과가 징역형과 벌금형에서 일관적으로 관찰되며, 배심원과 판사 모두에게서 관찰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뿐만 아니라 본 연구는 참여재판이라는 특별한 형태의 형사재판 결과를 활용하여 실제 배심원과 판사의 양형 판단에서 관찰되는 현상을 보여줌으로써 Bindler와 Hjalmarsson(2018)의 자연실험 결과와 함께 심각성-관용 효과가 실제 재판에서 관찰될 수 있다는 것을 지지하는 경험적 증거를 제시하였다. 특히, 심각성-관용 효과에 관한 연구가 매우 부족할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는 거의 관심을 받지 못하였고, 그 효과도 일관적이지 않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심각성-관용 효과에 대한 학문적 관심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무엇보다 본 연구의 결과로부터 제안된 징역형과 벌금형의 질적 차이, 사건의 심각성과 판단자가 경험하는 심리적 부담의 관계, 유무죄 판단과 양형 판단의 질적 차이에 관한 연구는 배심원 의사결정 과정의 기본적인 특성들과 관련된 것이다. 따라서 현재 수행되고 있는 사건 유형과 심리적 속성이 배심원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결과를 이해하고 해석하는 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더욱이 본 연구에서 양형 판단을 비교하기 위해 사건에 따라 변화하는 기준 양형을 통제한 양형 측정치를 사용한 점은 양형의 전체 범위 차이를 고려하기 어려워 제약이 있었던 다양한 사건 유형에서의 양형 비교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조정 양형이 양형 판단에 대한 가중/감경 요인의 영향을 수리적인 측면에서는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지만, 여전히 가중/감경 요인이 처단형과 권고형의 범위를 결정하는 데는 어느 정도로,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알 수 없으므로 양형 판단에 대한 개별 가중/감경 요인의 질적인 영향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판사의 양형 판단 자료로 간주한 것은 판사 한 명의 판단이 아니고 세 명의 판사에 의한 재판부의 판단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를 이해할 때에는 이 점을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한다. 또한, 본 연구에 활용된 판결서의 수와 판결서에

제시된 정보가 제한적이었던 바, 본 연구에서 관찰된 결과가 안정적으로 관찰되는지는 추가적인 판결서 분석과 책임감 수준, 사건에서 요구되는 증명의 강도 등을 통제한 경험적 연구를 통해 반복적으로 확인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모든 양형 판단을 자료분석에 포함하지 않았으므로 본 연구의 결과를 집행유예와 선고유예를 포함하는 양형 판단 전반으로 일반화되기보다 형의 유예가 없는 사건들에 대한 양형 판단 특성으로 해석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저자소개

한유화는 충북대학교 심리학과의 강사,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의 학술연구교수로 재직중이다. 국민참여재판과 배심원의 판단 및 의사결정, 범죄피해자를 비롯한 사건 당사자에 관한 법률 및 형사정책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과 의사결정에서의 그 영향, 심리적 속성의 측정 방법 등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진리는 충북대학교 심리학과 석사 과정생이며, 집단 간 맥락에서 사람들의 판단과 태도를 공부하고 있다. 특히 소수 집단의 도움 요청 행동과 암묵적 편견에 관심이 많으며, 행동 변화를 위한 개입 방법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

참고문헌

광주지방법원 2024고합42 판결 (2024. 5. 20.).

대전지법 2018고합428 판결 (2019. 7. 2.).

법원행정처 (2023). 2008~2022 국민참여재판 성과분석. 서울: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서울동부지법_2020고합356 판결 (2021. 6. 22.).

서울북부지법 2019고합396 판결 (2020. 4. 29.).

수원지방법원 2021고합814 판결 (2022. 5. 11.).

울산지방법원 2019고합52 판결 (2019. 5. 14.).

이재상 (2025). "음주·약물 감형, 어이없다"…국민 93% '범죄 처벌 강화' 목소리. 뉴스1, https://www.news1.kr/industry/general-industry/5994936?utm_source=copilot.com

창원지법 2018고합241 판결 (2019. 1. 14.).

청주지방법원 2021고합227 판결 (2021. 11. 29.).

춘천지방법원 2023고합37 판결 (2023. 6. 15.).

한유화 (2022). 국민참여재판의 배심단과 법원의 법적판단 비교. 형사정책연구, 33(3), 111-143.

한유화 (2023). 국민참여재판의 평판결 불일치 원인의 탐색: 2018년부터 2022년에 선고된 사건에 대한 검토. 법과사회, 74, 63-95.

한유화 (2025). 사건유형과 쟁점에 따른 배심원과 법원의 판단: 국민참여재판 평결-판결 불일치 사건 분석. 형사정책, 37(3), 337-371.

Anderson, C. J. (2003). The psychology of doing nothing: Forms of decision avoidance result from reason and emotion. *Psychological Bulletin, 129*(1), 139.

Asch, S. E. (1956). Studies of independence and conformity: I. A minority of one against a unanimous majority. *Psychological Monographs: General and Applied, 70*(9), 1.

Baron, R. S., Vandello, J. A., & Brunsman, B. (1996). The forgotten variable in conformity research: Impact of task importance on social influenc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1*(5), 915.

Bindler, A., & Hjalmarsson, R. (2018). How punishment severity affects jury verdicts: Evidence from two natural experiments. *American Economic Journal: Economic Policy, 10*(4), 36-78.

Bornstein, B. H., & Greene, E. (2011). Jury decision making: Implications for and from psychology. *Current Directions in Psychological Science, 20*(1), 63-67. https://doi.org/10.1177/0963721410397282

Cohen, J. (1988). *Statistical power analysis for the behavioral sciences* (2nd ed.).

Darley, J. M., & Latané, B. (1968). Bystander intervention in emergencies: Diffusion of responsibilit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4, Pt. 1), 377-383.

Davis, J. H., Kerr, N. L., Stasser, G., Meek, D., & Holt, R. (1977). Victim consequences, sentence severity, and decision processes in mock juries.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Performance, 18*(2), 346-365.

Deutsch, M., & Gerard, H. B. (1955). A study of normative and informational social influences upon individual judgment. *The Journal of Abnormal and Social Psychology, 51*(3), 629.

Diveica, V., Muraki, E. J., Binney, R. J., & Pexman, P. M. (2025). Contrasting the organization of concrete and abstract word meanings. *Psychonomic Bulletin & Review, 32*(4), 1814-1826.

Freedman, J. L. (1990). The effect of capital punishment on jurors' willingness to convict.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20*(6), 465-477.

Freedman, J. L., Krismer, K., MacDonald, J. E., & Cunningham, J. A. (1994). Severity of penalty, seriousness of the charge, and mock jurors' verdicts. *Law and Human Behavior, 18*(2), 189-202.

Grimalda, G., Ottoboni, G., Cappellini, A., Bonato, M., & Ranzini, M. (2025). Money counts: Effects of monetary vs. purely numerical values on the mental representation of quantities. *Psychological Research, 89*(2), 85. https://doi.org/10.1007/s00426-025-02118-z

Hamilton, J. D. (2020). *Time series analysis*. Princeton University Press.

Hester, R. K., & Smith, R. E. (1973). Effects of a mandatory death penalty on the decisions of simulated jurors as a function of heinousness of the crime. *Journal of Criminal Justice, 1*(4), 319-326.

Jones, A. M., Jones, S., & Penrod, S. (2015). Examining legal authoritarianism in the impact of punishment severity on juror decisions. *Psychology, Crime & Law, 21*(10), 939-951.

Kalven, H., Zeisel, H., Callahan, T., & Ennis, P. (1966). *The american jury* (p. 498). Boston: Little, Brown.

Kerr, N. L. (1978). Severity of prescribed penalty and mock jurors' verdict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6*(12), 1431-1442.

McComas, W. C., & Noll, M. E. (1974). Effects of seriousness of charge and punishment severity on the judgments of simulated jurors. *Psychological Record, 24*(4), 545-547.

Messimeris, D., Levy, R., & Le Bouc, R. (2023). Economic and social values in the brain: Evidence from lesions to the human ventromedial prefrontal cortex. *Frontiers in Neurology, 14*, 1198262. doi: 10.3389/fneur.2023.1198262

Nitsch, A., Garvert, M. M., Bellmund, J. L., Schuck, N. W., & Doeller, C. F. (2024). Grid-like entorhinal representation of an abstract value space during prospective decision making. *Nature Communications, 15*(1), 1198.

Pearson, J. M., Law, J. R., Skene, J. A., Beskind, D. H., Vidmar, N., Ball, D. A., & Skene, J. P. (2018). Modelling the effects of crime type and evidence on judgments about guilt. *Nature Human Behaviour, 2*(11), 856-866.

Smith, V. L. (1982). Microeconomic systems as an experimental science. *American Economic Review, 72*(5), 923-955.

Stevens, S. S. (1946). On the theory of scales of measurement. *Science, 103*(2684), 677-680.

Tversky, A., & Kahneman, D. (1974). Judgment under uncertainty: Heuristics and biases. *Science,*

185(4157), 1124-1131.

Vidmar, N. (1972). Effects of decision alternatives on the verdicts and social perceptions of simulated juror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22*(2), 211.

Wistrich, A. J., Guthrie, C., & Rachlinski, J. J. (2004). *Can judges ignore inadmissible information? The difficulty of deliberately disregarding*. University of Pennsylvania Law Review, 153, 1251.

1 차원고접수 : 2026. 04. 29.
수정원고접수 : 2026. 06. 15.
최종게재결정 : 2026. 06. 16.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Korean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y
2026, Vol. 40, No. 3, 305-329
https://doi.org/10.21193/kjspp.2026.40.3.003

Regular Article

The severity-leniency effect in sentencing judgment: A comparison of judgments between jurors and judges in Korean lay-participant trials

Yuhwa Han[1),2)] Jinri Lee[2)]

[1)]Institute for Legal Studies, Yonsei University [2)]Department of Psychology,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analyzed 202 Korean lay-participation trial cases (decided between 2019 and 2024) in which either a custodial sentence or a fine was ultimately imposed. The aims of the study were to determine whether the severity-leniency effect is also observed in the sentencing decisions of jurors and judges, and to explore its mechanisms by comparing the patterns of sentencing agreement between inter-jurors and judge-jury. The analysis revealed that, for both penalty types (imprisonment and fines), as the possible punishment increased, the severity-leniency effect-where the sentencing judgments of jurors and judges converged toward the lower limit of the standard range-was observed. Furthermore, as the possible punishment increased, both the likelihood of agreement among jurors and that of between jurors and judges decreased; moreover, as the severity of the crime increased, the variation in disagreement among jurors was greater than that of between jurors and judges. The severity-leniency effect observed in this study contradicted public opinion favoring harsher punishment. Furthermore, the results of this study contradict the logical expectation that people would conform to reduce the perceived responsibility associated with their judgment as the severity of the case increases. In the discussion, possible reasons for the results-which contradict these expectations-were presented, focusing on the procedural characteristics inherent in legal judgments in Korean lay-participation trials. The significance of this study lies in extending the severity-leniency effect to sentencing judgments using actual trial data.

Key words : sentencing judgment, juror, judge, Korean lay-participation trial, severity-leniency effect

부록. 판결서 정보 자료화 방법

변인명	내용	자료화 방법 /단위	비고	분석 준비
선고연도, 법원, 사건번호	피고인에 대한 법적 판단이 선고된 연도, 선고 법원, 사건번호	기재사항 입력		
인정된 죄명	피고인에 대해 인정된 죄명 (양형판단에 적용된 죄명)	기재사항 입력		
형의 유예 여부	피고인에게 선고된 형이 유예되었는지 여부	유예 없음:0 집행유예:1 선고유예:2	유예 없음과 선고유예 모두 선고된 경우 0,2로 코딩	
양형의 유형	피고인에게 선고된 양형의 유형	징역:1 벌금:2	징역형과 벌금형이 모두 있을 시에는 1로 코딩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하한/상한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상한	년, 월	일 단위 삭제, 사형, 무기징역은 문자로 코딩	개월로 환산, 이상값 제거
법률상 처단형 벌금의 하한/상한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법률상 처단형 벌금의 하한과 상한	원		이상값 제거
양형기준 적용 여부	피고인에게 선고된 죄명에 양형기준이 적용되는지의 여부	미적용:0 적용:1		이상값 제거
권고형의 범위 하한/상한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권고형의 하한과 상한	년, 월	일 단위는 삭제, 다수 범죄는 합산된 범위 코딩,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가 제시된 경우 수정된 권고형 범위 코딩	개월로 환산, 이상값 제거
권고 벌금 하한/상한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권고되는 벌금의 하한과 상한	원	하한/상한이 없는 경우 없음으로 코딩	이상값 제거
배심원 수	각 배심단의 크기	명		
배심원 양형 판단 수	배심단의 구체적인 양형의견 수	개		배심원 만장일치 여부 생성(의견 수가 1인 경우 만장일치로 자료화)

부록. 판결서 정보 자료화 방법 (계속)

변인명	내용	자료화 방법 /단위	비고	분석 준비
배심원 판단의 하한/상한	배심단 양형 판단의 하한과 상한	년, 월	사형, 무기징역은 문자로 코딩, 선고유예는 기간 벌금액이 있는 경우 기재, 없는 경우 무시	개월로 환산, 이상값 제거
배심원 벌금 하한/상한	배심단 양형 판단 중 벌금의 하한과 상한	원		이상값 제거
재판부 양형	재판부가 선고한 양형(징역)	년, 월	징역형과 벌금형이 모두 있는 경우 모두 코딩	개월로 환산
재판부 벌금	재판부가 선고한 양형(벌금)	원		
양형판단 일치 여부	배심단과 재판부의 양형 판단 일치 여부	불일치:0 일치:1	다수 의견 두 개 이상인 경우 재판부의 의견과 같은 의견이 있으면 일치로 코딩, 양형 기간과 집행유예 기간이 모두 일치하는 경우만 일치로 코딩	
배심원 최종 판단(양형)	단순 다수결 규칙에 따라 결정된 배심단의 양형 판단(징역)	년, 월	다수 의견 두 개 이상인 경우 재판부의 의견과 같은 의견이 있으면 그 의견을 최종 판단으로 코딩, 그렇지 않으면 미결정으로 코딩	개월로 환산, 이상값 제거
배심원 최종 판단(벌금)	단순 다수결 규칙에 따라 결정된 배심단의 양형 판단(벌금)	원	다수 의견 두 개 이상인 경우 재판부의 의견과 같은 의견이 있으면 그 의견을 최종 판단으로 코딩, 그렇지 않으면 미결정으로 코딩	이상값 제거
배심원의 조정된 양형 (처단형/징역 및 벌금)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를 통제한 배심단의 양형(징역 및 벌금)	개월/원	(최종 판단-하한)/(상한-하한)	
배심원의 조정된 양형 (권고형/징역 및 벌금)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를 통제한 배심단의 양형(징역 및 벌금)	개월/원	(최종 판단-하한)/(상한-하한)	
법원의 조정된 양형 (처단형/징역 및 벌금)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를 통제한 법원의 양형(징역 및 벌금)	개월	(최종 판단-하한)/(상한-하한)	
법원의 조정된 양형 (권고형/징역 및 벌금)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를 통제한 법원의 양형(징역 및 벌금)	개월	(최종 판단-하한)/(상한-하한)	